

예산운영관리위원회 운영규정

제정 2020.12.22. 개정 2022.03.04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해전대학교 교비회계 예산 편성 및 운영의 최적화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관리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본교 예산운영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3조(위원회 구성)

1.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2.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한다. <개정 2022.03.04.>
3. 본 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한다.

제4조(위원회의 임무)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1. 대학 발전계획에 근거한 예산편성 및 예산심의에 관한 사항
2.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
3. 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
4. 분기별 예산집행 점검 및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
5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6. 위원회는 『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』, 『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』, 본교 『예산회계규정』 을 준수한다.

제5조(회의소집)

1.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.
2.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최한다.

제6조(간사)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고 회의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. 간사는 기획팀 팀원으로 한다. <개정 2022.03.04.>

제7조(회의소집)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.

제8조(보고)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한 결과와 함께 분기별 예산 집행결과

를 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
부 칙(2020.12.22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03.04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03월 04일부터 시행한다.